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803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인선의원안)	2

I. 개요

1. 이인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80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인선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 24.
- (3) 회 부 일 : 2025. 1.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과세특례를 제공하여 출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 13조의2).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이인선의원안)

현 행	개정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 ○ 대상 - 직접 또는 창투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출자지분(특수관계인 주식·출자지분 제외)을 취득한 내국법인 * 단,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등 제외 ○ 공제액: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주식·출자지분: 출자시 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 Max (①출자가액, ②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액의 60%) ** 해당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적용기한: <u>2025. 12. 31.</u>	☐ <u>적용기한 연장</u> ○ 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액: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30. 12. 31.</u> ○ 시행일: 2026. 1. 1. (이인선의원안)

* 이인선의원안 2025. 1. 24. 발의(의안번호 7803)

☐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¹⁾, 벤처투자조합 등²⁾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에 신규로 출자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문창업투자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신규로 취득하여 출자하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제도임.

동 제도는 2016년 말 세법개정으로 2017년부터 신설·시행된 제도로써 제도 도입 이후 두 차례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2025년 말 일몰 예정임.

또한,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보다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로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확대하고 정책자금 중심의 모태펀드에 더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하여 2023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음.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 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135	172	260	335	676	652	557	584

주: 2024, 2025년도는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2024년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지난 몇년간 투자가 감소했던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게임산업 등의 투자 회복에 힘입어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적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연도별 국내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원, %, 건, 개)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투자금액			23,803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53,977	66,315
	전년 대비	증감	-	+10,446	+8,528	+268	+33,757	-9,162	-13,633	+12,338
		증감률	-	+43.9	+24.9	+0.6	+78.4	-11.9	-25.3	+22.9
투자 건수			2,417	3,150	3,713	4,231	5,559	5,286	4,807	5,425
	건당 투자		9.8	10.9	11.5	10.2	13.8	12.8	11.2	12.2
피투자기업 수			1,266	1,399	1,608	2,130	2,438	2,474	2,309	2,494
	기업당 투자		18.8	24.5	26.6	20.2	31.5	27.3	23.7	26.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개정안은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대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보다 민간 중심의 출자를 통해 창업자·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2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정책목표 달성도 파악을 위하여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특례의 효과성
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과세특례 혜택의 출자 증가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로
동 제도의 효과를 높게 평가함.

[벤처투자기업의 출자 증가효과]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충분한 효과 있음	효과 없음
전 체		8	75.0	25.0
수혜여부	수혜기업	5	100.0	0.0
	비수혜기업	3	33.3	66.7
기업규모별	중소기업	6	83.3	16.7
	중견기업	1	0.0	100.0
	대기업	1	100.0	0.0

자료: 기획재정부,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둘째, 벤처투자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경우 전체 기업 대비 고용 창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고용 증가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2년 기준 전체 기업의 고용 규모가 2.4% 증가한 반면, 33,045개
벤처기업은 약 745,800명을 고용해 채용인원이 전년 대비 8.1% 증

3) 기획재정부,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p.175.

가하였고, 벤처투자를 받은 2007개사의 고용증가율은 29.8%를 기록하였음.

벤처투자가 증가하고 창업환경이 선진화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고용시장 개선, 특히 청년층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적용기한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내 벤처펀드 출자현황⁴⁾을 보면 상당 기간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투자가 2023년 10조 8,558억원에서 2024년 8조 1,324억원으로 2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적용기한이 과도하게 길 경우 제도의 평가 및 개선 주기도 함께 길어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할 경우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 제도의 경우 2024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용기한의 폭을 짧게 하여 특례제도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동 제도로 인한 혜택은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조세특례 수혜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벤처투자회사·조합 + 신기술금융사·조합 합산통계

[국내 벤처투자·펀드결성 세부현황(출자자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정책금융	금액	25,947	34,045	31,951	21,770	24,226	+11.3%	
	비중	26.0%	19.1%	18.1%	16.7%	23.0%	-	
	모태펀드	금액	13,252	17,457	15,063	9,805	13,516	+37.8%
		비중	13.3%	9.8%	8.5%	7.5%	12.8%	-
	성장금융	금액	5,463	8,856	9,849	3,553	4,058	+14.2%
		비중	5.5%	5.0%	5.6%	2.7%	3.8%	-
	산업은행	금액	3,598	4,061	3,674	4,421	3,235	△26.8%
		비중	3.6%	2.3%	2.1%	3.4%	3.1%	-
	기타	금액	3,634	3,671	3,365	3,991	3,418	△14.4%
		비중	3.6%	2.1%	1.9%	3.1%	3.2%	-
민간부문	금액	73,912	144,436	144,450	108,558	81,324	△25.1%	
	비중	74.0%	80.9%	81.9%	83.3%	77.0%	-	
	개인	금액	8,299	28,874	23,042	14,383	10,999	△23.5%
		비중	8.3%	16.2%	13.1%	11.0%	10.4%	-
	일반법인	금액	18,243	39,955	36,582	27,225	23,152	△15.0%
		비중	18.3%	22.4%	20.7%	20.9%	21.9%	-
	금융기관 (산은 제외)	금액	23,312	44,890	49,021	42,205	28,721	△31.9%
		비중	23.3%	25.2%	27.8%	32.4%	27.2%	-
	연기금 및 공제회	금액	11,224	6,867	13,268	7,459	3,265	△56.2%
		비중	11.2%	3.8%	7.5%	5.7%	3.1%	-
	VC	금액	9,820	20,594	18,751	13,697	12,009	△12.3%
		비중	9.8%	11.5%	10.6%	10.5%	11.4%	-
	기타단체 및 외국인	금액	3,014	3,256	3,785	3,588	3,178	△11.4%
		비중	3.0%	1.8%	2.1%	2.8%	3.0%	-
	합계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년 벤처투자 11.9조원 ·펀드결성 10.6조원”, 2025. 2. 12.

문 의 처
02)6788-5154